

2015년도 의정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9. 18.~ 9. 24.(5일간)
- 감사분야 : 2013년 3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 분 계 획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총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시정	주의	징계	훈계	주의	회수	과태료	
16건	16건	14건(27명)	662천원	5	11	-	8	19	162	500	

II 주요 지적사항

○ (인사·행정) 겸직허가 없이 외부강의 출강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나, 대가의 유무,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재난안전과 소속 A팀장은 0000협회 경기북부지부의 요청으로 화재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되어 8개월간 25회 출강하면서 사전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강의신고만 하고 출강함.

❖【관련규정】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11장

○ (예산·회계) 외부강의 중 부당 시간외근무 실시

-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외부강의 출강 전·후에 지문인식기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외부강의 시간을 시간외근무 시간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 받음.

❖【관련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 (예방·민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업무소홀

-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 등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은 14일 이내, 변경 등 신고는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별지 서식에 그 사항을 관리하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수시교육)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타 행정기관에서 허가·신고 등 수리된 변경 사항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소방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A 업소가 수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소방서장은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소속직원 3명을 강사로 지정하여 교육 실시함(소방경 이상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소방위).

❖【관련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

○ (재난대응·안전) 의용소방대원 임명 업무처리 부적정

- 의용소방대원 신규 임용 시 본대 A 등 4명에게 법령 개정으로 없어진 신체검사서를 제출받고, 00 지역대 B 등 15명에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였음에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받았으며, 본대 C 등 5명은 개인사정으로 '15. 3.12.자로 사직하였음으로 재 입대를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유무 등을 다시 확인하여야 함에도 별도서류 징구(확인)없이 대원으로 임명, 본대 D 등 3명은 입대원서 서식('14.11.19.)이 변경되었음에도 구 서식 입대원서를 제출 받는 등 의용소방대 임명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관련규정】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규칙 제5조

□ 사건 개요

2014. 06. 05. 16:00경 구급차 내에서 약 7회에 걸쳐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를 소방서 특사경이 직접 체포하여 구속 수사한 사례임.

※ 피의자(김○○) 법원으로부터 **징역8월** 선고

□ 수사 경과

- (2014. 06. 05)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16:00경)
- (2014. 06. 09.) 경찰서로부터 **사건 인수**(의정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
- (2014. 08. 04.) 피의자 소재불명에 따른 수사 진행
- (2014. 08. 05.) 피의자 소재불명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
- (2014. 09. 01.) 피의자 **지명수배(A)** 조치
- (2014. 09. 03.) 피의자 소재불명에 따른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사건 송치
- (2014. 09. 19.) **피의자 소재 발견** 통보
- (2014. 09. 20.) **피의자 신병인수**(광역조사팀장 등 3명)
- (2014. 09. 21.)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광역조사팀장 등 3명)
- (2014. 09. 21.) 피의자 **교도소 신병·서류인계** 후 구금조치 완료
- (2014. 09. 26.) 보강수사 후 **지방검찰청 사건 송치**

□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소방특사경이 수사 주체가 되어 소방 활동 방해사범을 직접 구속 수사 및 송치
- 소방사범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
- 전문적 지식검비 수사경력자 양성 및 전문성에 대한 조직적 관리 필요